

대한민국 연락기관과 뉴질랜드 연락기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실무기술서

대한민국의 연락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뉴질랜드의 연락기관인 사회개발부는 행정약정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3조의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각 연락기관은 협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수급 자격 및 지급률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과 급여액을 포함한 정보를 연락서식을 통해 교환한다.
2. 각 연락기관은 협정 제13조 및 행정약정 제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상자의 신상 변동에 관해 알게 되는 경우 또는 상대 연락기관의 요청에 따라, 급여액의 변동과 사망을 포함하여 수급 자격의 유지와 상호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목록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조한다.
3. 각 연락기관은 급여를 결정한 후 행정약정 제3(2)조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연락서식으로 통보한다.
4. 행정약정 제4(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급여액에 관한 정보는 연락기관 간에 교환된다. 한쪽 연락기관이 상대 연락기관에 급여지급 변동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 연락기관은 수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연락서식을 통해 교환한다.

5. 각 계약당사자의 사회보장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행정약정 제4조에 의해 교환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5.1 연락기관은 협정 제13조 및 행정약정 제4조에 따라 사회보장 목적을 위하여 협정에 의해 또는 계약당사자의 사회보장법에 의해 규정된 급여의 청구인 또는 수급 중인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5.2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연락기관(요청기관)이 협정 제13조 및 행정약정 제4조에 따라 사회보장 목적을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대 연락기관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요청을 처리하며, 보유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연락서식을 통해 요청기관에 제공한다.

5.3 연락기관이 이 조에 의해 개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연락서식에는,

(가) 다음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다.

- (1) 성과 이름
- (2) 결혼 전 성(해당하는 경우)
- (3) 뉴질랜드 고객번호
- (4) 한국 국민연금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5) 생년월일

(나) 그리고 그 개인과 관련된 다음의 모든 신상 변동 정보와 각 신상 변동의 효력 발생일 또는 사건 발생일을 포함할 수 있다.

- (1) 개명
- (2) 혼인 관계의 변동
- (3) 본인,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사망
- (4) 주소 변동
- (5) 은행 계좌 내역의 변동
- (6) 거주국 변동
- (7) 급여 상태의 변경(예: 급여의 정지, 취소, 만료, 재개 또는 거절)과 변경 사유
- (8) 급여율의 변동
- (9) 거주지 내역(해당하는 경우)

5.4 협정 제13조 및 행정약정 제4조에 따라 연락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가) 요청하는 연락기관은 상대 연락기관에 자료 요청 목적을 통보한다.
그리고
- (나) 해당 정보의 교환이 각 계약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보는 교환되지 않는다.
- (다) 제5(4)조 (나)에 따라 연락기관이 요청에 따르기를 거절하는 경우, 그 연락기관은 거절에 관한 설명을 연락서식에 서면으로 요청기관에게 제공한다.

5.5 연락기관은 상호 고객의 신상 변동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가) 고객이 한 명인 경우, 연락서식 또는

(나) 고객이 한 명보다 많은 경우, 모든 해당 고객 개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록

5.6 이 조에 따른 정보를 접수한 연락기관은 상대 연락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할 경우, 제공받은 고객 상세정보와 보유 정보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그 정보가 특정 고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에 따라 갱신한다.

5.7 뉴질랜드 및 한국 급여 수급자는 급여 청구 시 양 연락기관 간 발생할 수 있는 정보교환에 대해 안내받는다. 청구인은 검토와 이의신청 권리에 대해서도 통보받는다.

5.8 뉴질랜드 연락기관이 뉴질랜드 및 한국 급여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한민국 연락기관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 수급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가입기간이 없는 뉴질랜드 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가입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5.9 양 연락기관은,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교환 정보 항목의 추가, 수정 또는 삭제를 서면으로 공동 결정할 수 있다.

6. 개인정보를 포함한 청구서, 동의서 및 연락서식은 등기 항공우편 또는 그와 동등한 항공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락기관 간 교환한다.

7. 상대 연락기관으로부터 연락서식을 통해 받은 정보는 수급자의 수급권 재심사에만 사용하고, 그 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협정에 따라 상대 연락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령한 어떠한 연락기관도 그 정보를 관련 개인으로부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국가에 제공할 수 없다.

8. 뉴질랜드 사회보장규정 2018 제242조의 범위 내에서 뉴질랜드 연락기관은 고객의 다음 사항을 전수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가) 성명

(나) 뉴질랜드 고객번호

(다) 한국 국민연금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라) 생년월일

그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뉴질랜드 연락기관은 그 고객기록을 수작업으로 갱신한다. 그 고객은 뉴질랜드 사회보장법 2018 제391조에 따라 검토를 청구할 수 있다.

9. 대한민국 연락기관은 자체 기록을 갱신하기 전에 고객의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성명

(나) 한국 국민연금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다) 뉴질랜드 고객번호

(라) 생년월일

그리고, 그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이에 따라 그 고객 기록을 갱신한다.

10. 상대 연락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락서식은 양측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파기된다.

11. 어떠한 연락기관도 상호 수급자의 뉴질랜드 고객번호 또는 한국 국민연금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재사용하거나 재부여하지 않는다.

12. 이 실무기술서는 협정 발효일에 개시되며, 협정 존속기간 동안 실시된다.

동등한 효력을 지닌 국문본과 영문본 각 2부씩 서명되었다.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

뉴질랜드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

날짜 :

날짜 :

장소 :

장소 :